

『VC벤처펀드 특별보증』 지원계획 공고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21. 1.13)」의 일환으로 ‘22년 VC벤처펀드 특별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1 지원개요

- (지원목적)**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에 필요한 벤처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의 신속한 펀드결성 지원
- (지원규모)** 연간 200억원 이내
- (지원대상)** 한국모태펀드(이하, ‘모태펀드’) 출자사업 운용사로 선정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유한책임회사형(LLC) 벤처캐피탈
- (지원 제외대상)**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에 본건 펀드결성을 등록한 벤처캐피탈
 - 기술보증기금 보증취급제한(보증금지기업·제한기업)[참고1] 및 보증제한 대상업종[참고2] 영위기업
 -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참고3] 미충족기업
 - 상시종업원 1,000명 초과 또는 총자산 1,000억원 초과인 기업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과 주채무계열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 기타 관련법규, 기술보증기금 내규 저축 등으로 지원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
- ※ 지원 제외대상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하며, 지원대상에 선정된 이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

2 | 보증지원 내용

□ (지원한도) 운용사별 최대 50억 원

- 펀드당 지원가능 보증금액은 최대 30억원에서 운용사 출자 예정 금액의 80% 이내

* 운용사당 지원가능 보증금액은 최대 50억 원에서 기술보증기금과 신보의 보증금액(유동화 기초자산 편입금액 포함)과 보증재단의 보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이내임
 * 신보(보증재단 포함)거래기업은 전액상환 하거나 기술보증기금으로 전환보증 가능한 경우에 특별보증 지원 가능(중복보증 불가)

- (자금용도) 모태펀드의 출자펀드(자펀드) 결성을 위한 운용사의 출자금
- (우대사항)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보증료 1%(고정보증료율)

3 | 의무 이행사항

- (자료제출) VC벤처펀드 특별보증 각 단계별 평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의 자료 제출 요구(관계기업 포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VC벤처펀드 특별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한국벤처투자에 제출하는 반기별 영업보고서*와 펀드 청산보고서를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투자자 정보 등 삭제 후 제출 가능
- (우선상환) 출자금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투자자산 처분 등에 따른 회수금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담보 대출금에 우선 상환하여야 합니다.

- **(성과공유)** 펀드 청산시 운용사 성과보수의 일부를 성과공유금으로 기술보증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성과공유금 산출(예시)	
<가정>	운용사 성과보수 10억원, 운용사 출자금 20억원(자기자금 10억원, 보증서대출금 10억원), 투자조합 운영기간 8년, 보증이용기간 4년(4년뒤 전액해지)
☞	성과공유금 25백만원 : 성과보수 10억원 × 10% × 레버리지비율 25% [(10억원/20억원)×(4년/8년)]
용어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공유금' : '성과보수'의 10%에 '레버리지비율'을 곱한 금액 ▪ '성과보수' : 한국벤처투자가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 운용사 선정 공고시 제시한 성과보수 ▪ '레버리지비율' : 투자조합 운영기간(출자금 납입시부터 분배시까지) 동안 운용사의 출자금 중 기보 보증부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4 선정평가 절차 및 평가 기준

- **평가절차 및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시 기
사업공고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등	'22.3.4(금)
↓		
온라인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www.kibo.or.kr)	3.4(금) ~ 3.30(수)
↓		
① 1차 평가 (요건검토)	▶ 기본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신용도 검토 *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저축 여부 등	~ 4.1(금)
↓		
② 2차 평가 (보증심사)	▶ 현장평가 및 보증심사 ▶ VC보증 검토표 평가	~ 4.15(금)
↓		
③ 최종평가 (보증심사위원회)	▶ 보증심사위원회 평가표에 따라 평가 * 투자현황, 투자능력, 재무현황 등	4.18(월)
↓		
최종선정	▶ 최종 선정기업 발표(개별통지)	4.18(월)
↓		
보증지원	▶ 보증서 발급	4.19(화) ~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기준

○ 신용도 검토 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보증취급 불가	
가.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대출금 보유
나.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최근 1년 이내 다음 사실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좌부도(1차 이상) (2)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등록 (3) 기보, 신보, 보증재단의 보증사고(사고유보 포함) 발생 또는 보증사고발생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4)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다.	심사기준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소비자거래기록정보” 보유
라.	심사기준일 현재 조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
마.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 최종평가(보증심사위원회) 기준

평가기준	배점	세부 평가지표
투자현황 (25점)	10	청산완료조합 현황 - 투자총액, 수익률, 투자업체수 등
	8	운영중인 조합 현황 - 결성(납입)총액, GP출자금, 보유현금, 수익률 등
	7	최근 투자현황 - 직전년도부터 현재까지 투자현황
투자능력 (25점)	10	투자심사 능력 - 주요기술(투자심사)인력 현황
	8	투자수익률 추세 - 최근 3년간 해산조합의 투자수익률 추세
	7	투자자산의 건전성 - 투자자산 평가내역
재무현황 (20점)	20	VC의 재무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 신용평가등급, 총자본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자기자본 비율, 부채비율, 자본잠식 여부 등
특별보증 지원 적합성(30점)	30	VC벤처펀드 특별보증 취지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 펀드의 주투자대상, 벤처캐피탈의 현행 재무상태 및 그간 투자실적, 특별보증 이외 자금조달 대안 및 회수가가능성 등
총 점		100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접수기간)** 2022년 3월 4일(금) ~ 3월 30일(수) 15시까지
- **(신청방법)**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절차>

① 'www.kibo.or.kr' 사이트 접속 → ② '디지털지점' → ③ '회원가입/로그인' → ④ '창업·투자' → ⑤ 'VC벤처펀드특별보증/신청하기' → ⑥ '양식다운로드', '신청하기' → ⑦ 기본정보 입력 → ⑧ 투자조합 결성제안서, 투자조합출자계획서 등 업로드(용량제한 각 항목당 15MB 유의) → ⑨ 제출('신청내역 조회'에서 신청 확인)

- *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별첨1]' 참고
- *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인터넷 신청시 등록
- * 모든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에 한하여 인정
-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접속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 * 신청·접수 후 반드시 **접수완료 상태를 확인**하실 것 (접수증 출력 가능)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① 투자조합 결성제안서, ② 조합현황 총괄, ③ 대표 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의 투자회수실적 [출자사업 신청시 한국벤처투자에 제출한 자료]
④ 투자조합출자계획서 [별첨2]
⑤ 사전동의서 [별첨3]
⑥ 최근월말(22.2.28)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⑦ 주주명부
⑧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舊: 법인등기부등본)
⑨ 감사보고서(2019~2021년) (감사보고서 미작성기업은 표준재무제표) * 보증신청시 '21년도 감사보고서(표준재무제표) 미작성기업은 추후 평가시 제출

※ 평가·심사 과정 중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요청 가능 및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6 유의사항

-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보증기금 내규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 공고문 내용 미숙지 및 자료의 입력 오류 또는 누락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정평가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선정 이후에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서류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선정 후 3개월이내 보증 약정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승인건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증지원 규모는 모태펀드 출자사업 일정 및 최종 선정 운용사 수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벤처 투자 센터	02-2280-4865, 4867
	벤처혁신사업부	051-606-7671, 7694

- 참고
1. 기술보증기금 보증취급제한
 2.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
 3.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

- 별첨
1.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2. 투자조합 출자 계획서 양식
 3. 사전동의서 양식

< 보증금지기업(기술보증규정 제13조) >

1.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2.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3.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자 나.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 보증제한기업(기술보증규정 제14조) >

1. 휴업 중인 기업
2. '보증금지기업'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3. '보증금지기업'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4.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 가. 대표자
 - 나. 실제 경영자
 - 다.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6.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7.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연체,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 4회
8. "금융 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이 제한되고 있는 기업
 - * 보증브로커 개입기업, 허위자료 제출기업, 금품제공기업, 부정청탁기업 등
9. 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라 한다)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하되 기금 내규에 따라 경영개선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제외)
10. 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11. 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기술보증규정 제13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나.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 다. 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 라.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가. 제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기술보증규정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 다. 제12호 기업의 실제 경영자
14. 제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참고2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

구 분	세부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新	舊
도박 게임 관련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 불건전 여부는 도박 해당여부로 판단	3340	3340
	·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소매업	46463, 47640	46463, 47640
	· 도박기계 임대업	69390	69390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75999	75999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13	91113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91249
사치 향락 관련	· 주류 중개업	46102	46102
	· 귀금속 중개업	46109	46109
	· 주류 도소매업	46331, 47221	46331, 47221
	· 귀금속 도소매업	46492, 47830	46492, 47830
	· 주점업	5621	5621
	·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23	91223
	· 무도장 운영업	91291	91291
	· 마사지업	96122	96122
부동산 관련	· 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1	68111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1	68121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68221, 68222	68221
기타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59142	59142
	· 전화방	91229	91229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91241	91241
	· 점술업 및 유사 서비스업	96992	96992

참고3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

구분	세부항목
결격 요건	① 실제 경영자가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실제 경영자 본인이 최대 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임 - 다만, 실제경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두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 시 총족으로 심사, 최대주주인 관계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와 동일한 경우에도 요건 총족한 것을 심사
(1개라도 "부"인 경우	② 실제경영자가(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금융질서문란, 허위자료 제출 또는 사해행위 사실 없음
보증지원 불가)	③ 실제경영자가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 사실 없음
	④ 실제경영자(본인이 실제경영자인 기업 포함)의 정책금융(보증부대출 포함)에 대한 용도 외 사용 사실 없음